대한내분비학회 내분비내과 전공의 초음파 지도인증의 기준에 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내분비내과 전공의 초음파 지도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내분비내과 전공의 초음파 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라 함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동안 초음파를 이용한 임상경험을 쌓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초음파 진단과 판독에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지도전문의의 자격은 대한내분비학회 평생회원으로서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제2장 절차

제4조 (인증분야)

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으며 초음파 검사를 교육할 자격을 갖춘 자를 인증한다.
나. 인증의 분야는 갑상선/두경부 분야로 한다.

제5조 (지도전문의 자격심사위원회)

가. 지도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내분비학회 내에 지도전문의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나. 자격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장, 교육이사가 당연직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당해 임원 중 5명 이내로 이사장이 선정하여 구성한다.

제6조 (지도전문의 자격인정 방법)

가. 초음파 지도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자격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나. 대한내분비학회는 지도전문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7조 (지도전문의의 기본 요건)

가. 의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나. 초음파 검사의 적응증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다. 초음파검사 기술의 기본적 원리와 한계에 대하여 숙지해야 한다.
라. 초음파로 검사하는 분야의 신체 장기나 영역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태생리학적 기본 지식을 숙지해야 한다.
마. 초음파검사 시행 후 결과를 판독할 수 있고, 합당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 기준)

가. 대한내분비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나.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대한갑상선학회 회원(준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전공의 수료 후, 총 3년 이상의 갑상선 분야 임상경력이 있어야 한다. (소속 기관 경력증명서(필수) 및 기관장의 갑상선 분야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증빙 공문 (자유양식))
라. 내분비내과 분과전문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내분비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제출)
마.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내분비학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 검사 관련 교육평점 12평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장 부칙 제13조 참조)
바.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내분비학회 학술대회 (연수강좌 포함)에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사. 최근 5년 이내에 200건 이상의 각 분야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 또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연 30건 이상 (150건 이상)의 초음파 시행 및 판독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장 서명된 환자 명단 제출)
아.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또는 대한갑상선학회의 학술대회에 연자나 좌장 경험이 2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논문(제1저자 및 책임저자) 1편 이상을 교육위원회가 인정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자. 그 외, 교육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다.
차. 자격 인정을 위해 소정의 인정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부칙 제14조 참조).

제9조 (지도전문의 관련 타 학회와의 교류)

가. 임상초음파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서로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 대상 학회의 지정과 보수교육 평점 인정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자격 갱신)

가. 지도전문의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나. 교육위원회는 자격 유효 기간의 만료 2개월 전에 지도전문의에게 서면이나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지도전문의는 유효 기간 만료전에 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갱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
    -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 기타 사유
라. 자격 갱신을 위하여 소정의 갱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부칙 제14조 참조).

제11조 (자격 갱신 요건)

가. 자격인정의 갱신 최소 기준 중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총족하면 된다.
    - 초음파검사 연평균 연 30건 이상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5년간 교육 인증의 관련 8 평점 이상 취득
    - 초음파 관련 논문 (원저, 증례) 1편 이상 (교신저자, 제1저자)을 교육위원회가 인정한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나. 그 외, 교육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전문의 갱신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 (자격 상실 및 재취득)

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격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나. 가 항의 경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 유예 기간 동안에도 지도전문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와 제9조에서 규정한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라. 지도전문의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부칙

제13조 (인정 평점 및 관련 학술대회)

가. 본 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나.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은 전체학회평점이 아닌 초음파 실습 평점만 인정하며 평점인정 학회는 본 학회 및 본 학회와 교육평점 상호 인정 학회인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대한갑상선학회이다.
다. 현재 인정평점은 대한내분비학회 초음파세션, 초음파관련 프로그램 평점 (1(일)/3점),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평점 (1(일)/3점), 대한갑상선학회 평점 (1(일)/3점)이 있다.
라. 대한내분비학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증자격의 갱신을 위해 참석을 요하는 초음파 관련학회 학술대회는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및 대한갑상선학회의 정기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초음파관련 프로그램이다.

제14조 (인정료)

신규 및 갱신 인정증 발급 시 인정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시행일)

가.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나. 규정은 2018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차 개정).
다.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차 개정).
라. 규정은 2024년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차 개정).
마. 규정은 2025년 9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차 개정).